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2026. 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2월 23일, 임미애의원 등 10인 제출

나. 회부일자: 2026년 2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4.9.)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4.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4.03.)

2. 제안설명의 요지

(임미애의원)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해상 물류 경로로 부상하고 있음.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 대비 항해 거리를 약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과 해운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음.

최근 홍해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수에즈 운하 항로의 안전성이 저하되고 중동 지역 에너지 수송로에 대한 의존도 완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북극항로의 대안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북극항로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인프라 투자와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이후 2016년까지 시범운항을 실시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그간 정책이 연구·협력 중심에 머물러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기반이 미흡했음.

특히 우리나라는 포항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에 철강·자동차 부품·반도체·이차전지 산업이 집적돼 있어 북극항로 활성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의 잠재력이 큼. 특히 포항 영일만항은 동해안 유일의 복합기능항만으로서 북극권 에너지·자원 도입과 저탄소철강 제품 수출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의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청정수소·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임. 북극권은 전 세계 미발견 천연가스의 약 30%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린란드 등 북극권 국가의 핵심광물 자원도 주목받고 있어 북극항로를 통한 에너지·자원 수입 다변화는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북극항로의 사업적 활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연관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없음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4.03.)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기타 사항

없음